

『통일연구』 원고 모집

『통일연구』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연 2회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남·북한의 대내외적인 현황과 통일에 관련된 제반 연구들을 게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원고 게재 및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통일연구』 원고작성 및 제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규정

제정: 2008. 3. 1

1차 개정: 2012. 4. 15

2차 개정: 2013. 5. 15

I. [논문심사 기준] 본 학술지의 논문심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문제의 적정성, 독자의 관심유발,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
2.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연구주제의 참신성, 기존연구와의 차별화, 학문적 기여도 등
3. 논술구조의 논리성: 구성의 체계성, 논리적 일관성, 분석방법의 적절성 등
4. 관련문헌과 사용자료의 적절성: 관련문헌의 적절한 사용, 논지에 적합한 인용 등
5. 원고작성의 완결성: 분량의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 원고 투고 요강 준수여부 등

II. [심사절차]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1. 저자의 익명성: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2.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4. 기일: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III. [심사위원 판정] 논문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세 등급으로 나눈다.

1. 게재 가: 위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을 충분히 충족한 논문. 교열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치기만 하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위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부분적인 또는 종합적인 수정이 필요한 논문.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문제가 수정될 수 있는 종류이고, 수정된 후에는 게재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3. 게재 불가: 논문이 심사기준 항목 전반을 충족하지 못해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쓰지 않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IV.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한다.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을 내린다. 종합판정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한다.

1. 게재 가: 현 상태에서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자 자신이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님. 다만 이 경우 맞춤법이나 주석 표기의 방법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교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수정 후 게재: 논문 심사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수정이 만족스러운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
3. 수정 후 재심: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함.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이 원고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논문의 수준이 『통일연구』 게재에 적당한지 심사
4. 게재 불가: 『통일연구』에서 게재가 불가함을 의미. 다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V. [논문의 수정] 논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근거로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저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고,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VI. [종합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게재 불가’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VII. [심사위원 판정과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심사위원의 판정과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사이의 관계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초심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가	가	부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 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재심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부	
가	부	부	게재 불가
부	부	부	

VIII.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 원고작성 및 제출요강

I. 원고 제출요강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된 일자로 한다.
2. 원고 접수마감일은 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로 한다. 원고접수 기간의 연장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한다.
3.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통일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한다.
4. 기고는 박사과정생 이상에 한해 가능하며, 공저의 경우 한 명 이상이 박사과정생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임기 중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5. 원고는 아래의 “II. 원고 작성요강”에 따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JAMS 홈페이지(<https://yinks.jams.or.kr/>)를 통해서 제출한다. 한글 원고의 경우, OOO(제목).hwp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통일연구』에 제출되는 논문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7. 『통일연구』에 제출되는 논문의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I. 원고 작성요강

1. 원고분량은 각주 및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 초록을 포함하여 A4 용지 15-20매 분량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투고 시 저자의 소속(대학, 연구소)과 국문초록, 목차, 주제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문 이름과 영문 제목, 주제어, 초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영문 원고를 투고 할 시에는 국문 초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3. 목차 및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II. 2, 2), (2)’의 예에 따른다.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한다.
5. 타인의 출판물에서 발췌 또는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출판물의 출전을 표기해야 하며, 이는 본문 또는 각주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구체적 형식은 아래의 “III. 출전 표시요령”을 참고한다.
6.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구체적 형식은 아래의 “IV.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7.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또는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와 그림의 출처는 표 또는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표기 후에 제시한다.

III. 출전 표시요령

1. 출전은 본문 또는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표기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본문 또는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 홍길동(1996) 또는 윌리엄스(Williams 1966)
 - 2) 저자명이 본문 또는 각주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 (홍길동 1992) 또는 (Williams 1966)
 - 3) 면수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 (홍길동 1979, 56) 혹은 (Williams 1990, 12)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1991, 35-36)
- 5) 한 저자의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홍길동 1979, 1991), (홍길동 1979a, 1979b)
- 6)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홍길동 1990; John 1990; Williams 1981, 72)
- 7)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OO일보』 1993/04/08, 5) 혹은 (『OOO』 1993/02, 233)
- 8) 간행 예정 또는 미간행 원고인 경우: (홍길동(미간)) 또는 (Williams(forthcoming))
- 9)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Williams(n.d.))
- 10) 기관 저자일 경우: (OO연구소 1992), 통일부(2012)
- 11) 동양고전일 경우: (論語 先進篇), 동양문헌을 인용할 경우, 한자의 원문을 각주로 첨부하는 것을 인정한다.
- 12) 외국어: 처음 등장할 경우 한글로 표기 후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이후 언급에는 원어약어를 사용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마오쩌둥(毛澤東),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V.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열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4.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어·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또한, 페이지는 숫자만을 표기한다.
5. 구체적인 예
 - 1) 저서
 - (1) 저자가 1인인 경우
진영재. 2010. 『정치학 총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Moon, Chung-in. 1996.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2) 저자나 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능한 모든 공동저(편)자 이름을 표기하되, 3인 이상인 경우 3인까지만 표기하고 “외”라고 표기할 수 있다.

민성길, 전우택, 윤덕룡. 2002.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Kim, Hyung-Kook, Myongsob Kim, and Amitav Acharya (eds). 2008. *Northeast Asia and the Two Koreas: Metastability, Security, and Communit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 학위논문

유시은. 201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분석: 7년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2001년~2007년)』.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Kim, Sung Ho. 1997. "Of 'Sect Man': The Modern Self and Civil Society in Max Weber's Political Thought." Ph. D. Dis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3) 편집된 책 속의 글

이은국. 2004. "SWOT분석에 의한 남북한 IT교류협력을 위한 전략모색." 신동천 편.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협력』, 147-73. 서울: 아르케.

Paige, Glenn D. 2008. "Korean Leadership for Nonkilling East Asian Common Security." Hyung-Kook Kim, Myongsob Kim, and Amitav Acharya (eds). *Northeast Asia and the Two Koreas: Metastability, Security, and Community*, 303-26.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4) 번역서

브레진스키, 즈비그뉴. 김명섭 옮김. 2000.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5)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사

이영선. 1997. "창간사: 통일공학의 새 지평을 열면서." 『통일연구』 1(1), 5-9.

Kim, Myongsob, Suzanne L. Parker, Jun Yong Choi, 2006. "Increasing Distrust of the USA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7(4), 427-45.

6) 발표논문

김용호. 2011. "북한의 정세변화와 통일기반의 강화를 위한 소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세미나.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11. 3. 10.

Joo, Seung-Ho. 2011.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The Russian Perspective." 52nd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ontreal, Canada. March 16-19.

7) 일간지,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김명섭. 2011. "나와 통일." 『서울신문』 (3월 2일).

Tsygankov, Andrei P. 2009. "Russia's Tilt Toward China." *The Moscow Times* (October 19)

8) 인터넷 자료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표기.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98. 10. 20).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98. 10. 20). (1/10 Bar).

9) 동양고전

『삼국사기』 또는 『論語』

6. 여기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편집위
원회로 문의한다.

▶ 발행 규정

1. 『통일연구』는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5월과 11
월의 말일(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2. 『통일연구』 발행인과 편집위원장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한다.
3. 『통일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원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게재 순서는 접수 순
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5. 심사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통일연구』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통일연구』를 출간하는 전 과정에서 기고자뿐만 아니라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학문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학자적 순수성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고자와 편집위원(회)은 원고의 제출, 심사, 판정에 있어서 반드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2조 (투고자 윤리 위반 행위) 투고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타 연구자 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는 행위는 물론 허위의 연구데이터 등에 기초한 연구결과 제출 및 부정한 공저자 기입행위 등을 포함한다.

- (1) 투고자가 타 연구자 또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임의로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는 행위. 이때 위조란 허위의 사실 또는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논문을 창출해내는 것을 이르며, 변조란 기존하는 자료 및 연구데이터, 연구 등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말한다.
- (2) 투고자가 타 연구자 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무단으로 표절하는 행위. 이때 표절이라 함은 타인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주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 (3) 투고자가 논문 작성 시 허위의 자료, 결과기록, 보고 등을 연구결과로서 제출하는 행위.
- (4) 2인 이상의 공저의 경우,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행위.

제3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 윤리 위반 행위)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편집위원이 투고 원고의 심사, 판정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결정을 하는 행위.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 함은 편집위원이 논문 심사와 판정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모든 행위

- (2) 편집위원회가 『통일연구』의 출간 목적과 무관한 성격의 논문을 승인하는 행위
- (3) 편집위원회가 논문 심사위원들의 판정 결과를 무시하고 『통일연구』의 다른 일반적인 논문 수준에 맞지 않는 저급한 논문을 승인하는 행위

제3장 조사와 심의

제4조 (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

- (1) 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발행인은 신청인의 제기에 의해 제2조와 제3조의 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할 중립적인 윤리심사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2) 윤리심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 (3) 조사 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조사와 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2조와 제3조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조사절차 중에 제1조 혹은 제2조 위반 혐의가 있는 피신청인(편집위원회의 경우 편집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혹은 전자메일)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일체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적 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4장 제재 및 재심의

제6조 (제재)

- (1) 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기고자나 편집위원(회)에 대해 위반 내용에 상응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2조를 위반한 기고자의 경우, 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혹은 직권 취소 및 공개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3조를 위반한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경고, 공개경고, 편집위원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재심의)

-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로부터 최종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 (2) 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을 결정하면 제5조와 제6조의 절차를 재 진행하여야 한다.

『통일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8. 3. 1

개정: 2011. 3. 1

I. 편집위원회 구성과 선임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전문성, 학술활동, 전국적 분포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발행인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은 당연직 편집자문위원으로 한다.
5. 국제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편집 자문을 받을 수 있다.

II. 편집위원 선정 기준

1. 편집위원의 전문성: 편집위원 후보들이 통일, 국제관계, 북한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
2. 편집위원의 학술활동: 편집위원 후보들이 통일, 국제관계, 북한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
3. 전국적 분포: 편집위원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분포를 고려한다.

III. 편집 주간 및 간사

1.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편집주간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IV.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된다(상반기 4월 마지막 주와 하반기 10월 마지막 주).
3. 편집위원회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들의 추천
 - 나.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게재 여부 종합판정
 - 다.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관련 규정의 개정
 - 라. 학술지 편집관련 기타 사항들에 대한 토의 및 결정
4.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